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731-6156 / 전송(02)731-6562
 처리부서: 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법무담당관 박동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 운영권

문서번호 법무 11010-264
 시행일자 1999. 1. 18. (년)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 | | | | | |
|-------|-----|----------|--|--------------|-----------------------------------|
| 취급 | | 시 장 | | | |
| 보존 | 영구 | | | | |
| 기획예산실 | 전 결 | 29 126 0 | | | 결재 1999. 1. 18 기획예산실장 16 |
| 법무담당관 | 박동봉 | | | | |
| | | | | | |
| ★ 기안 | 운영권 | | |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 협조 |

제목 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폐지규정 발령

후인제 900 호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1. 20.(수)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900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홍보담당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1. 20.(수)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900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2부. 끝.

법 무 담 당 관

(제3안)

수신 : 받는 곳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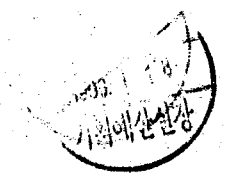
제목 : 훈령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1. 20.(수)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900호

첨부 : 발령목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받는 곳 : 교통기획과장, 교통방송본부장

훈령 발령 목록

총 1 건 (페이지)

| 연 번 | 법 규 명 | 번 호 | 주 관 부 서 |
|-----|------------------------------|-------|-------------------|
| 1 |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 규정폐지규정 | 제900호 | 교통기획과 (교통방송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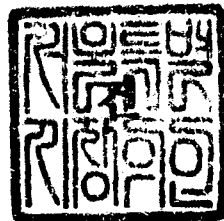
1999. 1. 18
기획예산실장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

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고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폐지규정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수집·전파 및 긴급 수배사항 등을 방송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에서 파견받은 통신원(경찰관) 등으로 교통정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의 여전상 동 규정에 맞도록 교통정보실을 운영할 수 없으며(경찰관 파견 및 경찰과의 교통무전망 구성 곤란 등) 또한 그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통방송본부 직제규칙 및 기타 교통방송본부의 내부규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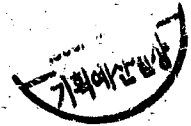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폐지규정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 통 방 송 본 부

우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8 / 전화 (02) 311-5611 / 전송 311-5656

처리부서 : 정보실 (별관 2층) 차장 : 최동호 담당 : 윤기원

문서번호 정보 12000-14
 시행일자 1999. 1. 8.(년)
 (경유)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법무담당관

| | | | | | |
|-----|----|----------|---|--|---|
| 신 | 발 | 무담당관 박승봉 | 지 | | |
| 접 | 일자 | 99. 1. 8 | 시 | | |
| | 시간 | : | 결 | | 재 |
| 수 | 번호 | 116 | 재 | | 이 |
| 처리과 | | | 공 | | 이 |
| 담당자 | | | 람 | | 이 |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규정 폐지 발령 의뢰

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폐지코자 하오니 발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 규정 5부. 끝.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 통 방 송 본 부

우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8 / 전화 (02) 311-5611 / 전송 311-5656
 처리부서 : 정보실 (별관 2층) 차장 : 최동호 담당 : 윤기원

문서번호 정보 12000- 14
 시행일자 1999. 1. 8. (년)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 | | |
|-----|-----|-----------------|
| 취급 | | 교통관리실장 |
| 보존 | | |
| 본부장 | 신준우 | 나동석 |
| 실장 | | 법무담당관 심사필 |
| 차장 | 최동호 | 교통기획과장 113 5400 |
| 기안 | 윤기원 | |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규정 폐지(안)

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규정은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수집과 전파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제반 긴급 수배사항을 방송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훈령 706호, 90. 7. 23)하였으나,
 2. 제정당시의 기능, 구성, 통신, 임무등 대부분이 현재의 여건과 맞지 않고 교통정보실 내부 사무분장으로도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규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우리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2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규정 폐지 발령의뢰

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폐지코자 하오니 발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교통정보실 운영 규정 5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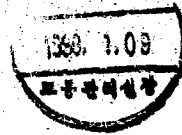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장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폐지규정

| | | | | |
|-----|-------|-------|---|---|
| 4월 | 19 | 11 | 1 | 1 |
| 장차 | 법제실사관 | 법부담담관 | | |
| 이성복 | 이성복 | 박종봉 | | |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수집·전파 및 긴급 수배사항 등을 방송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에서 파견받은 통신원(경찰관) 등으로 교통정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의 여건상 동 규정에 맞도록 교통정보실을 운영할 수 없으며(경찰관 파견 및 경찰과의 교통무전망 구성 곤란 등) 또한 그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통방송본부 직제규칙 및 기타 교통방송본부의 내부규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폐지규정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교통정보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회장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회장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직·운영한다.

1. 경찰통신원은 교통경찰과 교통사이카 및 순찰차, 교통관리대, 고속순찰차, 방
법순찰차 등의 승무원 및 지·파출소 요원을 당연직으로 하되, 각 기능별로
핵심요원을 별도 선발 운영한다.

2. 보조통신원은 각 경찰서장으로 부터 추천받아 선발된 모범운전자, 부책임자
회 회원, 기타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봉사대 및 보조통신원으로 자원하는 지
도급 인사로 한다.

② 보조통신원의 선발은 경찰서 또는 조직·단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접수
자세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확정한다.

③ 확정된 보조통신원은 지역별(중부,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직할대)로 지역책
임자와 총무를 두어 근무 및 업무연락을 수행토록 한다.

④ 보조통신원의 교육 및 근무지정은 정보실장이 편성국과 협의 결정하고 본부
장에 보고후, 지역별 책임자와 총무에게 통보 시행한다.

제 7 조(통신원의 근무) ① 경찰통신원을 제외한 보조통신원은 교통관리 및 방송상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근무를 명할 때에는 최소한 근무
3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모범운전 통신원 및 봉사단체 통신원은 매일 6명씩 순번제로 하여 오전(07:
00~10:00) 오후(17:00~20:00)에 각 3명씩 정보실의 보조근무를 한다.

③ 정보실 및 특정지역 근무를 명받아 보조통신원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때는 소속지역 총무에 보고, 근무교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총무는
근무 교체 사실을 정보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통신원의 임무) ① 경찰통신원은 업무상 얻은 모든 교통관련 정보를 빠짐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통신원은 운행중 얻은 모든 정보를 즉시 정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실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지점 및 도로의 정체사항
2. 교통규제의 신설 및 변경
3.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교통처리 변경 및 통제
4. 교통사고 및 화재, 다중범죄 등으로 소통에 장애요인 발생상황
5. 차량도난, 사고도주, 택시강도등 긴급수배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교통경찰관 및 통신요원의 선행
7. 교통단속 계획 및 홍보사항
8. 지역적 이상기후 발생사항
9. 유실물의 신고·접수
10. 기타 교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접수정보의 확인) ① 정보실장은 일반시민의 제보중 신빙성이 의심되는 제보를 접수하였을시는 반드시 인접 교통경찰 통신원에 명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확인 결과 사실임이 판명되었을시에 한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수배) ① 정보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긴급수배 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성국과 협조 즉시 방송하여야 한다.

1.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져 차량의 번호 등이 확인되었을 때
2.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도주한다는 신고가 있을 때
3. 택시강도, 차량도난, 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때
4. 기타 긴급수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긴급 수배사항이 해제되었을시는 즉시 해제 사실을 방송하여야 한다.

제11조(방송) ① 정보실에서는 편성내용에 따라 직접 방송에 참여 방송할 수 있다.

② 정보실에서는 교통프로그램 제작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통신) ① 정보실장은 제보사항의 접수와 수합, 분석 및 방송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실에 접수된 내용이나 방송된 내용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3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교대) ① 정보실장 및 차장은 매일 07:00~23:00까지 방송시간을 감안, 적의 교대근무를 한다.

② 정보실 근무 경찰관의 근무시간은 매일 09:30에서 익일 09:30까지로 하되, 3부제(일근, 야근, 비번)로 구분 교대근무한다.

제14조(유공자포상) ① 정보실장은 교통통신원의 개인별 정보제공 실적을 매월말 기준 수합 기록관리하고, 연말에는 1년간 실적을 수합하여 우수자증 표창 및 복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자 3명 이내 : 특진
2. 우수자 30명 이내 : 표창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 무 일 지

| | | | | | | | | | |
|---------|---------|---|-----|----|---|-----|-----|----|--|
| 년 | | 월 | | 일 | | 일기 | | 요일 | |
| 근 무 자 | | | | | | | | | |
| 감 부 | | | 울 부 | | | 병 부 | | | |
| 제급 | 성명 | 인 | 제급 | 성명 | 인 | 제급 | 성명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 무 사 항 | | | | | | | | | |
| 시 간 | 근 무 내 용 | | | | | 근무자 | 제보자 | 비고 | |
| | | | | | | | | | |

■ 근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방송여부 기록